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2019년 5월 21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5. 20.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5. 20.(월)	담당부서	에너지안전과
담당과장	이희원 과장(044-203-5270)	담 당 자	류창환 사무관(044-203-5275)

수소충전소 규제합리화로 수소경제 확산 이끈다

- 산업부,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기준 개정 공포 -

◇ **수소충전소와 철도간 이격거리, 충전소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등 충전소 설치·운영 관련 기준을 개정하여 충전인프라 확대 선도**

❶ **(충전소 운영기준 개선)** 수소자동차 충전시설*의 **안전관리 책임자 자격**을 기존 가스기능사외에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

*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시간 당 처리능력 480세제곱미터 이하

❷ **(충전소 설치기준 개선)** 수소충전소와 화기·철도간 **이격거리 개선**

-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,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 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 가능
- 수소충전소와 화기간 8m 거리 유지의무 대상에서,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제외

❸ **(불합리한 규제 개선)** 수소충전소의 정기점검(2년에 1회 이상) 실시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수소자동차를 제외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**수소자동차 충전 안전규제를 합리화**하여 **충전인프라의 구축·확대**를 선도하기 위해, **고압가스 안전관리법** 시행령·시행규칙을 개정·공포*하였다.

* 시행령(대통령령 제29757호, '19.5.14.), 시행규칙(부령 제334호, '19.5.21.)

□ 금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 개정은 「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」 발표('19.1월) 이후 **수소경제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가속화하는 촉진제 역할**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, **구체적인 개정내용은** 다음과 같다.

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**시행령 개정**을 통해 **수소자동차 충전소*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**을 LPG·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**가스기능사 외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**하였다.

*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시간 당 처리능력 480세제곱미터 이하 수소충전소

○ 이를 통해,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**안전관리 인력의 확보가 용이**하게 되어 충전소 **운영비용 절감 및 보급 활성화**에 기여할 것이다

□ 또한,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**시행규칙 개정**을 통해 수소자동차 **충전소와 철도·화기간 이격거리, 비현실적인 정기점검 및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**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.

○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**안전도를 평가** 받고, 그 내용에 따라 **시설을 보완**하면 **설치가 가능**토록 하고,

- 충전소와 화기간 이격거리 유지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**화기는 해외기준*과 같이 제외**하였다.

* 일본도 추출기를 포함한 가스설비 내부의 화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

○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**정기점검**(2년에 1회) **대상**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**회수 대상**에서 **LPG·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자동차를 제외**하였다.

- 이는 불특정다수의 수소자동차가 **비정기적으로 수소충전소를 방문하며 정기점검 실시가 어려운 현실적 여건**과 수소자동차에 충전된 수소는 **기술적으로 회수가 곤란**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이다.

○ 이번 규제 현실화로,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**부지확보 문제 해소와 운영 여건 개선에 기여**할 것으로 기대된다.

< 주요 개정내용 >

구분	LPG·CNG자동차 충전소	수소자동차 충전소	
		개정 전	개정 후
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	가스기능사, 양성교육 이수자	가스기능사	가스기능사, 양성교육 이수자
충전소와 철도간 이격거리	LPG : X CNG : 30m이상	30m이상	안전도평가 후 시설보완 시 30m 이내 가능
충전소와 추출기간 이격거리	X	8m이상	X
자동차 점검	가스공급 시	가스공급 시, 정기점검(2년에 1회)	가스공급 시
연료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 자동차	X	회수 대상에 수소자동차 포함	X

* 충전소 규모 :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시간 당 처리능력 480세제곱미터 이하

□ 산업부는 **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된 수소경제의 활성화**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,

○ 향후에도 지난 1월 발표한 「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」의 **차질없는 이행**을 위해 다양한 **후속조치**를 **지속적으로 추진**할 예정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류창환 사무관(☎ 044-203-527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